우리나라 수산정책과 발전방향

해 양 수 산 부
수산정책국장 김영규

목 차

Ⅰ. UR이후 대책 평가와 향후 과제 ---------- 7

1. UR이후 대책 평가 ---------- 7

가. 90년대 수산업·어촌여건 및 투융자규모 ---------- 7

나. 대책추진 성과 ---------- 7

다. 최근 10여년간 수산업구조의 변화 ---------- 8

2. 여건변화와 전망 ---------- 10

3. 앞으로 풀어가야 할 중점과제 ---------- 12

가. 패러다임의 변화 ---------- 12

나.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 ---------- 12

4. 우리 수산업 · 어촌의 역할 ---------- 13

Ⅱ. 새로운 수산정책의 기본틀과 정책과제 ---------- 15

1. 정책의 기본틀 ---------- 15

2. 향후 정책의 기본방향 ---------- 16

Ⅲ. 주요 정책과제 ---------- 17

1. 지속 가능한 어업실현을 위한 자원관리 및 해양환경 개선 ---------- 17

□□ 지속적 생산을 위한 어업관리 및 자원조성 ---------- 17

(1)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 17

(2) 종묘매입 방류사업 ---------- 17

(3) 바다목장화 사업 ---------- 18

(4) 인공어초 사업 ---------- 18

(5) 수산자원관리·조성센터설립운영 ---------- 19

(6)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 19

(7) 양식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 ---------- 20

(8) 해외어장개발 지원 및 자원조사 ---------- 20

(9) 주요 연안국과의 협력 ---------- 21

(10) 친환경어선건조 및 안전설비 지원 ---------- 22

□□. 해양환경 개선과 친환경 어업 ---------- 22
(1)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오염해역 준설사업 ---------- 22
(2) 수중침적폐기물 수거·처리사업 ---------- 23
(3)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 23
(4) 해양폐기물종합처리시스템 구축 ---------- 23
(5) 해양오염 원격감시체제 구축 ---------- 23
(6) 황해 환경보전을 위한 개선사업 ---------- 24
(7) 해양환경변화 대응 ---------- 24
(8) 갯벌생태계 조사 ---------- 25
(9) 습지보호지역 관리 ---------- 25
(10) 해양환경개선기술개발 ---------- 25
(11) 연안어장 정화를 통한 자원 회복 ---------- 26
(12) 수산물 질병관리체계 확립 ---------- 26
(13) 어류양식장 자가오염방지를 위해 배합사료 공급율 확대 ---------- 26
(14) 적조의 신속대응 및 방제강화 ---------- 27
(15) 내수면어업 개발사업 추진 ---------- 28
(16) 침몰선박 처리 ---------- 28
(17) 방치폐선 처리 ---------- 28

2. 생산구조개편을 통한 경쟁력있는 수산업 실현 ---------- 29
(1)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 29
(2) 양식어업 구조조정 ---------- 29
(3) 원양어업 구조조정 ---------- 30
(4) 노후 원양어선 신조대체 ---------- 30
3. 어업질서 정착 ---------- 31
(1) 불법어업 근절대책 ---------- 31
(2) 어업지도선 건조 ---------- 31
(3) 어업지도 첨단장비 확충 ---------- 31
(4) 불법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 ---------- 32
(5) 무면허 · 초과시설 등 불법양식시설 근절 ---------- 32

(6) 어선안전조업지원 ---------- 32
(7) 어선안전점검요원운영 ---------- 33
4. 소비자 지향적인 수산식품 산업의 육성 ---------- 33
(1) 소비자 지향적 공급체계 구축과 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 ---------- 33
(2) 거점산자소비지 시장 육성을 통한 유통물류체계 개선 ---------- 34
(3) 시장지향적 수산물 수급시스템 구축 ---------- 34
(4) 주력상품 개발을 통한 수출상품의 부가가치 증대 ---------- 35
5. 수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체제의 확보 ---------- 36
(1) 다양한 직접지불제 도입 ---------- 36
(2) FTA피해 지원 추진 ---------- 36
(3) 수산정책자금 지원제도 추진 ---------- 37
(4) 수산정책자금 부채경감 대책 추진 ---------- 38
(5) 면세유 등 수산조세 지원체제 개선 ---------- 39
(6) 수산부문 정책보험제도 도입 ---------- 39
(7) 수협의 조기경영화 추진 ---------- 39
(8) 영어자금 지원추진 ---------- 40
(9) 원양어업경영자금이차보전 ---------- 41
6. 수산업에 대한 새로운 발전동력의 확보 ---------- 41
(1) 수산업전문인력의 지속적 육성 ---------- 41
(2) 수산연구 개발투자 확충 및 개발기술의 실용화 ---------- 42
(3) 수산기술관리소를 최일선 종합행정기관으로 기능재편 ---------- 42
(4) 수산통계의 이관과 어촌정보인프라 확충 ---------- 42
(5) 수산자원관리 정보화 사업 ---------- 43
7. 어촌지역 활성화와 어업인 복지확충 ---------- 44
(1) 어촌종합개발사업 ---------- 44
(2) 다기능을 갖춘 국가어항개발 촉진 ---------- 44
(3) 지방어항개발 ---------- 45
(4) 연안항개발 ---------- 45
(5) 연안정비사업 ---------- 46

(6) 어촌체험마을 조성 ---------- 46
(7)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 46
(8)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 47
(9) 어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 ---------- 47
(10) 농어업출신 고교생 자녀학자금 보조 ---------- 47
(11) 농어업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47
(12) 연근해 어선원에 대한 교육 훈련 ---------- 48
(13) 선원의 복지 및 직업안정을 위한 정책 ---------- 48

<참고> 중장기 투융자 세부계획 내용 ---------- 49
<참고> 주요수산 정책지표 ---------- 50

Ⅰ. UR 이후 대책 평가와 향후 과제

1. UR이후 대책 평가

가. `90년대 수산업 · 어촌 여건 및 투융자 규모

□ UR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수산업분야도 본격적인 개방체제로 전환

○ 그러나, 어업자원과 어업인력 감소, 수산물 수입급증 등으로 어업경영 악화

- 연근해어선 톤당 생산량 : (`90) 3.4톤 → (`02) 3.1톤 (9%감소)
- 수산물자급율 : (`90) 127% → (`02) 72%
- 어가소득 : (`90) 10,123천원 → (`02) 21,816천원 (2.18배)

□ 특히, 어업질서 정착 및 기반정비가 완료된 선진국에 비해 지속적 생산이 가능한 자원관리체계 미흡, 수산업 생산 기반시설, 체계적이고 현대화 되지않은 유통시설 및 시스템 등으로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

□ UR협상에 대비하여 `92년부터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수산자원조성,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어항건설, 양식어장개발, 어장환경개선, 유통개선 등에 중점 투자

○ `92~`02년 기간중 5조1천억원을 투융자

- 어촌 SOC분야(어항, 어촌) : 1조 3천억원(24.9%)
- 어업인 구제조치성 지원사업(영어자금, 어선감척) : 1조원 (19.6%)
- 어업인 미래투자성 지원사업(유통구조,기술개발,인력양성,양식업 등) : 1조 6천억원 (31.4%)
- 기타 (원양, 기타) : 1조 2천억원 (24.0%)

나. 대책 추진 성과

□ 그 결과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자원관리 시스템을 정비하여 자원고갈에도 지속적 어업이 가능하도록 자원관리 및 조성체계 구축

○ 많은 어선세력 및 불법어업 등에 의한 자원남획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수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국민에게 공급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실시, 수산자원 조성 및 불법어업 지속적 단속

○ 해양환경개선이 중요하다는 어업인 인식 및 정책전환

□ 규모화·전문화가 진전되는 등 수산업내부의 구조조정 진행

○ 규모화·전문화된 양식어가 증가와 부가가치가 높은 어종의 양식으로 품종의 다양화

○ 자율관리어업 확대 및 자체 감척 추진

□ 선진화된 수산물 유통기반을 마련하고, 품질고급화 촉진

○ 활어위판장 확충 등 위판장시설의 전문화 및 직거래 정착

○ 지역별 특산품 개발, 소포장화 등 품질 차별화로 소비자 신뢰 제고

- 품질인증 대상품목 : ('93) 10개품목 → ('02) 48개품목
- 품질인증 업체 : ('93) 48개업체 → ('02) 176개업체
- 품질인증 건수 : ('93) 48건 194톤 → ('02) 290건 3,513톤

□ 어촌 및 어항개발을 통한 어촌 정주환경 개선

○ 태풍 등 재해에 대비한 어선 안전수용을 위해 4개어항 완공으로 어항 완공율 제고

○ 전국 109개 권역의 어촌종합개발사업 완료를 통한 어촌 정주환경 개선

○ 아름다운 어촌 100선 지정 등 어촌관광 활성화에 주력하여 어업외소득 증대 기여

다. 최근 10여년간 수산업구조의 변화 ('92→'02)

어업인구 : 어가인구 비중이 0.97%에서 0.45%로 감소

○ 어가인구는 215천명으로 '92 대비 50.6% 감소

- 어가인구 반감기간 : '70년 →'91년(21년소요) →'02년(11년소요)

※ 어가인구 : ('92) 425천명 → ('02) 215천명

○ 어업 취업인구는 207천명에서 128천명으로 38.2% 감소

어업생산 : 어업생산의 GDP비중이 1.3% → 0.7%로 낮아짐

○ 어가총생산 : ('93) 3조7천억 → ('02) 4조2천원으로 17% 성장

어가소득 : 어업소득, 어업외소득 비중은 줄고, 이전수입의 비중은 증가함

○ 소득비중 : 어업48% → 46%, 어업외 34% → 29% 이전수입 17%→23%

○ 도시·어촌간 소득격차 급격히 확대

- 어가 / 도시가구 : ('92) 81% → ('97) 88% → ('02) 78%

※ ('92) 12백만원/22 → ('97) 20백만원/23 → ('02) 22백만원/28

○ 어가부채는 급격한 증가 추세

- 주로 어업부채와 가계성부채가 주된 원인
- ('92) 6,485천원/12,371 : 52% → ('97) 11,906천원/20,331: 58% → ('02) 17,494천원/21,816 : 80%

소비·유통 :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수산물 소비량의 증가

○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증가

- ('92) 40.8kg → ('02) 41.6kg

○ 수산물 공동출하 직거래비중 확대

수산물교역 : 무역수지는 2001년을 기점으로 적자전환

○ 수출 : 주 수출국인 일본의 경기침체와 중국수산물의 일본시장 잠식

○ 수입 : 중국수산물 수입증가와 국민의 수산물 소비선호도 증가

《연도별 수산물 무역수지》 (단위 : 백만$)

년도별 월 별	국 가 전 체			수 산 물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1996	129,715	150,339	△20,624	1,635	1,080	555
1997	136,164	144,616	△8,452	1,493	1,045	448
1998	132,313	93,282	39,031	1,369	587	782
1999	143,685	119,752	23,933	1,521	1,179	342
2000	172,268	160,481	11,787	1,505	1,411	94
2001	150,439	141,098	9,341	1,274	1,648	△374
2002	162,471	152,126	10,344	1,160	1,884	△724

2. 여건변화와 전망

□ 세계화와 시장개방

○ DDA협상진행, FTA확대 등으로 시장개방의 확대가 불가피하고, 수산정책에 대한 국제적 제약도 강화될 전망

○ 수산분야 관세인하와 무역을 왜곡하고 자원을 고갈시키는 부정적인 수산보조금의 축소·금지가 불가피

□ 경제사회 변화의 흐름과 어업에의 영향

○ 개방화·자유화·국제화·분권화 등의 가속화로 국가간 장벽해소

- 개방적 시장경제질서에 의한 무한경쟁은 우리어업에 위협인 동시에 기회로 작용

○ 세계화속에서 지방화가 진행되면서 분권화 진행

- 인간·생명·환경을 중시하는 풍조확산으로 생명산업·환경산업으로의 어업의 가치 재평가

□ 어업경영 악화

○ 어업자원과 어업인력이 빠른 속도로 감소

- 어업자원에 비해 어선세력 과다로 어장생산성 하락
- 어업구조개편에 따른 신규진입 억제로 어업을 담당할 후계인력의 질적저하가 진행되어 효율적인 생산체제 확립 곤란

□ 고품질 수산물 소비증가

○ 국민소득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로 식품안전, 환경 등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가

- 소비패턴의 다양화·고급화되고, 가격보다는 안전성, 브랜드, 신선도 등 품질에 대한 선호가 뚜렷해지면서 품질경쟁력 확보가 중요

□ 어가소득정체 및 어촌의 자생력과 경쟁력 약화

○ 전체경제와 수산업부문간 성장격차 확대, 어가부채 증가로 자생력 약화

○ 어가인구는 지속 감소하고, 어촌의 고령화 현상도 단기간내 개선되기는 어려운 실정

□ 휴식공간으로서 어촌지역에 대한 선호도 증가

○ 생활수준 향상 및 주5일제 근무확산 등에 따라 여가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대

- 전국 반일 생활권화로 어촌관광에 대한 새로운 수요 증대

○ 어촌관련 자원을 이용한 상품을 소비자 기호에 맞게 개발함으로써 어촌의 부가가치 창출제고

○ 어촌지역의 고유자원을 보전하여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창출하고 만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

- 어촌생활환경 개선 및 투자여건을 개선해 나간다면 새로운 기회의 공간으로 변화 가능

3. 앞으로 풀어가야 할 중점과제

가. 패러다임의 변화

□ 시장경쟁을 통한 구조조정

- ㅇ 시장지향적 국제 수산여건 변화에 따라 시장경쟁에 부응하는 구조조정 추진
- ㅇ 수산물의 생산·유통·소비 전과정에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
  - 정부주도 물가관리 정책에서 민간 자율적 시장조절 기능 강화
- ㅇ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시장유인정책으로 전환

□ 생산중심에서 소비지향의 어업으로 전환

- ㅇ 수산물은 소비자 식탁을 풍요롭게 하는 상품의 역할 수행
- ㅇ 유통·가공 등 종합식품산업으로 육성
- ㅇ 수요욕구가 높은 어종의 자원조성과 양식방법의 개발

□ 쾌적한 생활공간으로서의 어촌실현

- ㅇ 어촌·어항·어장을 연계한 어촌종합개발사업 등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소득기반시설 확충
- ㅇ 어촌의 양호한 관광자원을 적극개발 어업외 소득원 개발
- ㅇ 어촌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복지후생과 교육환경 개선

나.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

□ 외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튼튼한 수산업 육성

- ㅇ 수산업은 경쟁력이 없어 국가경제에 걸림돌이라는 인식을 불식하고 국민에게 우수한 단백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산업으로 체질을 강화
- ㅇ 어업질서를 확립하는 소극적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어업실현을 위한 구조조정과 적

극적인 자원관리 및 해양환경개선에 중점

○ 고품질 안전 수산물을 선호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수출을 확대하여 무역흑자 달성, 고품질의 우리수산물의 수출증대 실현

□ **개방화시대 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 개방으로 인한 수산물 가격하락 및 어가소득 감소에 적극 대응

○ 자연재해 등에 대비한 수산업경영위험 완화장치 마련

□ **도시와 더불어 균형발전 할 수 있는 어촌건설**

○ 생활여건의 낙후, 고령화·인구감소 등으로 공동화되고 활력을 잃어가는 어촌의 회생

○ 주5일 근무시대, 국민연금시대, 도로·통신망 발전, 어촌다움 등 농촌의 기회요인을 도시·어촌 균형발전의 계기로 활동

○ 사람, 자본, 산업의 어촌유입 장애요인 제거 및 촉진

- 정부는 어업인의 창의적이고 자조적인 노력을 최대한 뒷받침 -

4. 우리 수산업 · 어촌의 역할

◇ 수산업·어촌은 국가의 유지 및 발전에 있어서 경제적·환경적·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수산업이 국가전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0.7%(`02)이나 투입재, 식품가공·외식산업 등 전후방 연관산업 비중이 크고, 국민에게 우수한 단백질 공급

○ 경제개발 당시 외화획득의 중요한 위치 차지 및 취업기회 제공

○ 우리의 수산물 생산량은 세계 12위에 위치해 있고, 국민의 1인당 연간소비량은 증가 추세

- (`90) 36.2㎏ → (`02) 41.6㎏

□ 수산업, 어촌은 시장의 잣대로만 평가할 수 없는 국토·환경보전, 자연경관 형성, 지역사회 유지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

- ㅇ 환경보전, 관광·심미적 기능, 재해예방기능 등 사회경제적 순기능 외에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토의 균형이용을 도모하는 중요기능 수행
- ㅇ 도시 과밀화 방지, 일자리 창출, 어촌다움을 토대로 정주 공간 유지, 여가 공간 제공 등 사회적 역할도 수행
- ㅇ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시장실패의 보정을 위해 직접지불제 등 보조금을 지급하여 자국의 수산업을 보호

□ 향후 수산업의 경제적 역할 축소는 불가피하지만 어촌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므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도시 · 어촌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산업 · 어촌에 집중투자가 중요하고 시급

Ⅱ. 새로운 수산정책의 기본틀과 정책과제

1. 정책의 기본틀

VISION

풍요로운 바다, 쾌적한 정주환경의 복지어촌 건설

목 표

◆ 바 다 : 깨끗하고 자원이 풍부한 바다

◆ 어업인 : 자립할 수 있고 경쟁력 있는 전문어업인

◆ 어 촌 : 수산업과 다양한 생활이 어우러진 쾌적한 정주환경

정책의 전환

○ 정책대상 : 생산중심에서 → 소비·수산식품어촌유통까지 포괄

○ 지원방식 : 간접지원에서 직접지원으로
일괄지원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 정책방향 : 정부주도에서 시장지향형 민간자율로

○ 정책관심분야확대 : 사회인프라와 복지인프라 확충

☞ 신해양시대의 어업기반확충과 소비자가 만족하는 시장지향 어업육성, 개방화시대 어가소득 안정 및 교육 · 의료 · 문화환경이 어우러진 어촌정주환경 조성

2. 향후 정책의 기본방향

수산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시장경쟁을 통한 구조조정
▷ 생산 중심에서 소비자 지향의 어업으로 전환
▷ 쾌적한 생활공간으로서의 어촌실현

기회와 위협 : 세계수산동향

▷ 공해수산자원 관리 강화
▷ 책임있는 어업실현을 위한 구체적 조치요구
▷ 수산물 무역자유화 가속

강점과 약점 : 국내수산환경

▷ 어업협정체결로 어장 축소
▷ 수산부문의 부가가치 감소
▷ 수산자원의 감소
▷ 어업노동구조의 취약

□ 지속가능한 어업환경 조성과 자율적 어업경영을 통한 어업질서 확립과 경쟁력 향상

□ 소비자 기호를 충족하고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는 수산물을 제공하여 소비자와 더불어 사는 어업 구현

□ 수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중에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적극 육성

□ 정책자금의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투융자 정책과 효율적인 배분 시스템의 운용

□ 지리적 특성과 친환경적 수산자원을 활용하는 어촌어항의 개발 등 어업외 소득원을 개발하고 어업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

Ⅲ. 주요 정책과제

1. 지속 가능한 어업실현을 위한 자원관리 및 해양환경 개선

□□. 지속적생산을 위한 어업관리 및 자원조성

(1).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 어업인 의식개혁, 우수사례 발굴, 상호정보교환을 위하여 자율 관리지도자 협의회를 지역 및 중앙에 설치·운영
- 자율관리 공동체 및 지도자 협의회 지원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추진협의회" 및 "상설지원단" 회의 정례화
- 민간주도로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수협 지도사업과 수산회 지원 활성화로 민간단체 역할 확대

○ 자율관리어업 확산 및 어업인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 자율관리 적극 참여를 위한 우수공동체 선발 및 지원(60개소, 110억원)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표준모델을 개발, 전국 어촌으로 확산시키고 참여의지가 높은 신규 공동체 적극 발굴·지원

※ 참여공동체 : ('03년) 122개소 → ('04년) 173개소(15,269명)

(2). 종묘매입·방류사업

○ 해역별 특성에 맞는 방류 품종 지정 및 방류 대상어 다양화 추진

- 방류 어종 확대 및 특화품종 지정육성 : `03년 24종 ⇒ `04년 29종

○ 열성어 방류 차단을 위해 종묘 생산단계부터 방류까지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근친교배 방지를 위해 친어집단을 유전학적으로 분석 및 유전육종 프로그램 개발

- 추진기간 : 2003~2013(10년간)

○ 어류생존율 향상 등 종묘방류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류어 크기 상향조정 및 가급적 야성화훈련이 실시된 종묘매입·방류

- `02까지 5~7cm ⇒ `03년이후 10cm전후
- 장기적으로는 자연순치 의무화 또는 순치시설이 없는 업체는 입찰참가 배제방안 검토

ㅇ 종묘방류 후 체계적인 효과조사 등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전담기구 설립

- 국립수산과학원에 해역별, 어종별 방류 효과조사의 체계적 실시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전담기구(수산자원관리조성센터)설립

(3). 바다목장화 사업

ㅇ 2010년까지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시범 바다목장 5개소를 개발하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 후 전국 연안으로 확대

- 해역별로 개발된 모델을 기초하여 지자체 주관으로 확대 개발하되, 재원은 지방비 및 국비, 바다목장 이용자도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달
- 순수 지자체 사업으로 바다목장 개발시 개발된 요소기술 지원

ㅇ 바다목장 관리 및 이용의 주체, 관리·이용권의 이양, 각 주체별 책임과 권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

ㅇ 통영바다목장 : 2006년까지 240억원 투자 조성완료

ㅇ 전남 다도해형 바다목장 : 2008년까지 307억원 투자 조성완료

ㅇ 동해형 바다목장(울진) : 2009년까지 355억원 투자 조성완료

ㅇ 서해형 바다목장(태안) : 2009년까지 337억원 투자 조성완료

ㅇ 제주형 바다목장(북제주) : 2010년까지 355억원 투자 조성완료

(4). 인공어초사업

ㅇ 총 적지대상 면적(307천ha) 지속적 시설 및 신규어초 개발

ㅇ 어초어장 사후관리 강화로 인공어초사업의 효과 제고

- 효율적 사후관리 수행을 위한 단지 규모화 및 첨단장비 확보
- 어초단지 규모화 및 첨단 과학장비를 확보, 폐어망 제거 등 사후 관리시스템 강화
- 어초어장도 제착 및 어초실태 조사 등으로 어초어장의 효율적 이용 및 사후관리 체제 구축
- 수산자원관리 정보화시스템 및 연안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 어초시설 사후관리 종합정보시스템 시·도별 구축

ㅇ 인공어초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한 국립수산과학원 내 전담기구(수산자원관리조성센타) 설립 추진

ㅇ 인공어초시설, 어초어장관리, 해중림조성 사업 지속적 추진

- 인공어초 개발 : ('03) 24종 → ('13) 60종
- 어초어장도 제작: '03~'07년(국립해양조사원)

○ 수산자원관리정보화시스템과 연계 어초시설 사후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04~'05년)

○ 어업인 및 레저관광객들의 인공어초어장의 이용·관리에 관한 제도 마련('04년)
- 「기르는어업육성법 제 10조」에 의거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운영

(5). 수산자원관리·조성센터 설립·운영

○ 수산자원관리·조성센터를 단계적으로 설립 추진
- 1단계 : 수산과학원에 설치 · 운영('04~'05)
- 2단계 : 100명 규모의 민간기구로 설립('06~)

○ 수산과학원 내에 전담부서(센터) 설치 완료 : '04. 1.
- 조직/인원 : 본부 및 동 · 서 · 남해 3개팀/ 26명
- 업무 :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조사 및 사후관리 등

○ 100명 규모의 민간「수산자원관리센터」설립 준비 : '05. 1~12

○ 민간 「수산자원관리센터」설립 · 출범 : '06. 1.
- 조직/인원 : 본부 및 동 · 서 · 남해 5개 지역센터/ 100명
- 업무 : TAC옵저버·정보화 시스템 운영, 수산자원조성사업 집행 및 사전조사 · 사후관리 등 정부위탁업무 수행

(6).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 적정 어선세력 유지 및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남획방지로 어업자원의 지속 · 가능한 확대 재생산기반 구축

○ 어업인 소득활동 안정화 기여 및 수산분야 국민경제 건전화 도모

○ UN협약법 준수로 국제사회 참여 강화 및 세계 수산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

○ TAC 업종 및 어종선정방법 개선
- 지역별, 업종별 어종을 전국적, 전 업종으로 확대 실시('06년)
- 혼획율이 높은 어종은 2~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실시

○ TAC 결정에 따른 실시어종의 자원평가 신뢰성 확보방안 강구('07년)
- 어업자원의 과학적인 평가를 위한 시험조사선 건조 및 과학장비 구입

○ TAC 실시 어종에 대한 위판장 지정제도 운영('04년) 및 옵서버 증원 운영(2013년까지 40여명)

○ 어업인 참여의식 고취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수산발전기금 지원

○ 어업인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강화를 위한 어업인 간담회 강화

(7). 양식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

○ 내파성 가두리 시설 지원 확대
- 기존 목재 가두리 양식시설을 태풍 등에 강한 내파성 가두리 시설로 교체 추진

※ 현재 가두리 110천대의 0.6% 수준인 650대, 내파성 가두리 설치

○ 외해 어류양식 어장개발을 위한 소파제시설 추진
- 대상해역
· 어장환경 악화 및 적조발생 등으로 내만의 양식시설물을 외해어장 개발이 필요한 해역
· 개방형 만이나 외연해역 및 섬과 섬 사이 등 개발 잠재력이 있는 해역

○ 개량부자 및 야간점등부자 등 계속적 지원

○ 외해어장 개발을 위한 양식장 등에 대한 지원 확대

(8). 해외어장개발 지원 및 자원조사

○ 해외어장개발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04)

○ 해외 신어장(신규 · 틈새 · 재개발)개발을 위한 자원조사 사업 지속실시 : 매년 2개소

○ 해외어장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 단기적으로 국립수산과학원내에 "해외어장정보은행"을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원양어업협회 등을 "해외어장개발전담기관"으로 지정하거나 별도의 기구를 설치

ㅇ 해외어장 개발을 위한 민간업체의 참여 유도(인센티브 부여 등)

(9). 주요 연안국과의 협력

ㅇ 주요 연안국과의 어업협정 및 수산협력약정 체결 확대
- 한 · 페루 어업협정 체결
- 브라질, 나미비아, 콜롬비아, 우루과이 등과 수산협력약정 체결

ㅇ 주요 연안국과 정기적 교류를 통한 장기적 협력관계 구축
-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아르헨티나, 브라질, 나미비아 등과 매년 수산협력회의 개최

ㅇ 주요 연안국에 대한 고위인사 초청 및 교섭단 · 전문가 파견
-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의 수산 고위급 인사 초청 및 교류 강화
- 노르웨이, 나미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 교섭단 · 전문가 파견

ㅇ 수산개도국에 대한 협력사업 확대
- 연수생 초청 및 전문가 파견 사업을 확대하고, 수산관련 개발조사 및 프로젝트 등 개발(KOICA와 협조)

ㅇ 신설 및 미가입 국제수산기구에 대한 가입 적극 추진
-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및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가입 추진
- 남동대서양수산기구(SEAFO) 등 신설추진 국제수산기구 설립동향 관찰

ㅇ 지역수산기구 논의에 적극 대처하여 우리업계 이익보호
- 어업활동의 감시 · 감독(MCS)을 위한 옵서버 승선, 선박감시체제(VMS) 구축 및 타국선박에 의한 승선검색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대비태세 확립
- 자원보존을 위한 어획능력 관리 및 IUU 어업방지노력에 능동적 대처

ㅇ FAO 및 OECD의 불법어업방지 노력에 적극 협력
- FAO의 불법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IPOA-IUU)에 대한 국내 실행계획 수립

ㅇ UN 공해어족보존협정(UNFSA)에 대한 입장 재정립
- 동 협정의 조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제적 추세를 감안하여 가입여부 결정

ㅇ 국제수산기구회의의 국내 개최로 우리나라 입지 강화
- 제11차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Southern Bluefin Tuna)(`04년)

- 제7차 북태평양 연안국수산회의(North Pacific Rim Fisheries Conference)(`04년)

(10). 친환경어선건조 및 안전설비지원

○ 새로운 어선어업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05년부터 적정규모 친환경 어선의 표준어선형 개발 보급(1~5톤급 9종) 등 적극 추진

- 환경 친화적이고 자원 수급의 재활용이 용이한 연료절감형 고부가가치 알루미늄합금어선의 수급 일반화
- 학계, 연구소 및 관련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연구체제를 구축하여 개발 효율성 증대

※ 표준어선형 개발 : 매년 2종(`05~`07)씩 6종, `08~`13년까지 3종

○ 어선의 안전설비지원은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기관대체, 장비 · 설비개량, 어선용기계공급 등으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되 해양환경을 고려하여 안전장비 · 설비 지원대상 범위 확대

- 어선기관대체 : 저효율 노후기관을 선박용 기관으로 대체
- 장비 · 설비개량 : 어선냉동설비, 선체구조개량 등 현대화설비 지원
- 어선용 기계공급 : 안전조업 및 어획 제고를 위한 기계 지원

※ 지원실적 : `77~2003년까지 4,106억원(`04계획 : 41억원)

□□. 해양환경 개선과 친환경 어업

(1).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오염해역준설 사업

○ 전국 주요 연안해역의 오염퇴적물 조사(`06까지)

○ 오염퇴적물 조사결과를 토대로 오염 우심해역 20개소에 대한 퇴적오니 준설사업 실시

ㅇ 오염퇴적물 준설기준 마련 등 정화 · 복원 체계 구축

(2). 수중침적 폐기물 수거 · 처리사업

ㅇ 연근해 주요어장 중심으로 폐기물 수거 및 투자 확대

ㅇ 해양환경보전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해역관리청(국가, 지자체) 간의 역할 정립

ㅇ 어업인과 함께 하는 해양정화사업 추진

ㅇ 정부의 해양환경보전 의지표명 및 민 · 관협력 체제 구축

(3).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ㅇ 어장에서 버려져 해양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어업용 폐스티로폼 등을 친환경적으로 감용시켜 자원으로 재활용

ㅇ 폐스티로폼의 경제적 · 환경적 처리로 자원재활용 및 처리비용 감소 (타 처리방식에 대비 1/10 수준)

ㅇ 연간 폐스티로폼 발생(1,000만개 이상) 감용시, 약 1,000억원 처리비 절감효과

(4). 해양폐기물 종합처리시스템 구축

ㅇ 해양폐기물의 핵심기술요소에 대한 연차별 연구개발 및 실용화
- 폐기물 발생지역 및 폐기물의 종류, 형태(침적,부유,해안방치)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핵심요소 기술개발 추진
- 특히, 수심 1,000m내외에 침적(동해, 명태어장)되어있는 폐어구의 조사장비 및 수거기술개발

ㅇ 개별 요소기술의 접목 및 유기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인 정화시스템 구성 · 운영

(5). 해양오염 원격감시체제 구축

ㅇ 수질자동 측정소 운영을 위해 기 구축된 시화호(3개소), 낙동강하구, 인천-제주간(정기여객선), 마산만(2개소)에 설치된 수질측정소 및 신규 측정소(3개소)의 시설운영비의 지원

ㅇ 해양오염이 심각한 특별관리해역에 우선 설치하고, 환경관리해역, 일반해역 순으로 측정소 설치를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ㅇ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할 예정인 전지구해양관측망(GOOS)에 참여하기 위한 국내기반 구축

ㅇ 정부의 특별관리해역 확대지정으로 환경조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의 고비용·저효율의 환경조사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체계적 · 비용효과적인 자동관측시스템의 개발 및 확충

ㅇ 정확한 환경변화 예측·예보를 통한 국민생활 및 산업에 유용한 정보를 서비스하는 관측망 구축 및 측정장비 개발

(6). 황해 환경보전을 위한 개선사업

ㅇ 퇴적물/층 기원 및 경계범위 파악으로 황해-동중국해 해양영토 경계획정 대비 자료축적과 환경상태평가를 위한 오염분석

ㅇ 환경 위해 정도를 알려주는 조기오염경보지표(생물)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평가 기술개발 및 활용

ㅇ 황사 및 황사 부착물질이 한반도 인근해역의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규명과 황사 이동시 해양 및 대기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변화 분석

(7). 해양환경변화 대응

ㅇ 해양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안전 관리체계 구축

ㅇ 국내외 내분비계 장애물질 규제 움직임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

ㅇ 내분비계 장애물질 오염실태 모니터링 체제 구축 및 D/B화

ㅇ 기반연구

- 수산생물 검색기법 확립, 국제협력 및 국내외 대응전략 연구 등

ㅇ 오염실태 및 생태영향 연구

- 해양생태계내 오염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 기법확립, 독성 및 작용기전 연구 등

ㅇ 거동 연구 및 예측모델 개발

- 유입경로 및 해양생태계내 거동연구, 거동예측 모델개발 및 적용연구

(8). 갯벌생태계 조사

○ 전국 연안습지조사 및 전국 해양자연환경조사 실시로 보전가치가 있는 갯벌 및 해양생태계를 규명하여 보호지역 지정 및 모니터링 실시

○ 연안습지 및 해양생태계 조사 각 1식 실시
- 갯벌생태계 조사 (`08~`13)
- 전국해양자연환경조사 실시 (`05~`09)
-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매년 4개소)

(9). 습지보호지역 관리

○ 장기적으로 보호지역 지정 확대
- 보전가치가 있는 습지보호지역, 생태계보전지역 추가지정

○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보호지역별 특성에 맞는 해양생태계 보전사업 지속추진
- 생태관광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사업 전개
- 지자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자율적인 관리체제 구축

(10). 해양환경개선기술개발

○ 처리에 많은 사회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수산 폐기물로 콘크리트 혼화재 및 지반개량재 등 폐기물 재활용기술 개발로 정책적 방안 도출, 대책수립

○ 유류오염으로 인한 어업 피해 손해 산정기법 연구 및 과학적인 피해 조사 및 평가 시스템 구축

○ 환경친화적인 천연방오제 개발로 중금속(구리) 방오제로 인한 해양환경오염 예방 및 수산생물의 먹이사슬을 통한 농축 및 인간위생에의 치명적 위해 방지

○ 밸러스트 수 배출규제 대응기술 개발로 외래생물종의 토착생태계 교란 및 파괴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저하를 예방하여 우리나라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호

ㅇ 선박의 배출가스 규제 기준 강화 등 변화하는 국제 협약 및 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내 내항선사와 어민 등 선박용 엔진 수요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11). 연안어장 정화를 통한 자원 회복

ㅇ 육상 오염처리시설 조기확충(환경부)
- 처리계획 : (`02까지) 60% → (`05까지) 80%
- 시설계획 : (`02까지) 66개소 51,280억원 → (`05까지) 279개소 74,563억원

ㅇ 어장정화 등록업체 등록기준 강화로 전문성 확보
- 특허 및 기술개발 업체 우대로 업체 난립 방지

ㅇ 패각 재활용업체 운영 활성화로 폐기물량 최소화
- 패화석비료 생산업체 운영자금 지원(수산발전기금)
- 패화석비료를 농림부 토양개량사업에 공급 추진

ㅇ 양식어장 휴식년제의 시범실시 방안 마련
- 오염이 심화된 해역에 대하여 우선 시범실시

(12). 수산물 질병관리체계 확립

ㅇ 질병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고효능 저가 백신 개발

ㅇ 항생제 대용 가능한 천연 면역증강제 개발

ㅇ 질병 조기 진단법 개발(진단 키드 등)

ㅇ 국가공인 수산질병관리사 · 관리원 제도 신설 추진

(13). 어류양식장 자가오염 방지를 위해 배합사료 공급율 확대

□ 실용배합사료 개발(`03~`06)

ㅇ 양식 대상종의 실용 배합사료 개발 및 보급
- 어종별 영양요구량 및 사료원료 이용기준 마련
- 어종별 배합사료 공급체계 확립

ㅇ 영양 요구량 기준에 의한 실용 배합사료 개발 및 지원

※ 2003년에 대중성 어종인 넙치 배합사료 시제품 생산

○ 실용 배합사료 사용 시범어장 운영 및 어업인 홍보

○ 배합사료 품질관리 및 사료영양 특성 연구(`04~`08)

- 배합사료 품질평가 기준확립 및 품질평가
- 기능성 사료개발(인삼넙치 등), 육질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 국립수산과학원내 사료전문 연구기능 강화

○ 사료전문연구소 신설(포항) 및 연구인력 보강

- 사료전문가 2명 → 6명

○ 산 · 학 · 연 합동연구 및 협조체제 구축

- 사료연구협의회 구성(14명) : 과학원 6, 학계 2, 사료업계 4, 수협 2
- 사료회사에서 기술개발시 개발비용 보전방안 강구

○ 배합사료 개발 연구 및 품질관리 방안 연구

- 양어사료개발 연구팀 구성(10명) : 과학원 5, 학계 2, 사료업계 3

□ 사료관리 법령의 정비

○ 양식사료 관리를 농림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

○ 배합사료의 품질관리 실시 근거 마련

- 생사료의 사용금지 근거마련(`07년)
- 배합사료의 품질평가기관 지정 운영(국립수산과학원)

(14). 적조의 신속대응 및 방제 강화

○ 적조 원격감시망 구축

- 남해안 나로도 주변해역에 2개소 시범운영
- 주요 적조발생해역 10개소(남해, 동해) 자동 적조관측망 시설

○ 적조의 이동·확산 예측모델 개발

- 해양추적자(SF-6) 및 인공위성 표류부이 등을 이용한 적조의 이동 · 확산 예측모델 개발
- 적조발생 및 적조의 이동·확산 예측 프로그램 개발

○ 친환경적 적조방제물질 연구개발

- 고효율 황토제품 등 친환경 구제물질 연구 개발
- 적조 방제장치 및 기구의 연구개발

ㅇ 적조 신구제물질 사용에 관한 인증제도 마련

ㅇ 양식어업 시설기준 강화
- 양식장의 적조방제 장비 구비 요건 등 어업허가 조건 강화
- 적조 발생시 육상양식장의 어장관리지침 마련

(15). 내수면어업 개발사업 추진

ㅇ 내수면 수산자원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자원조성과 보호관리
- 토산어종, 연어 등 종묘 매입 · 방류사업 확대
- 인공산란장 조성 및 어도시설 확충 (`03년부터)
- 내수면 잠재력조사 (`04~`06)

ㅇ 환경친화적 내수면 고도 양식기술 개발 · 보급
- 새로운 양식 대상종 개발 및 품종개량
- 국내 토속어종의 관상어 개발
- 순환여과 양식 등 첨단양식기술 보급 및 양식장 시설 개선

(16). 침몰선박 처리

ㅇ 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침몰선박 위치수색 및 상태, 해역특성 등 조사 후 침몰 원목선의 인양여부를 결정코자 함(`04예산 1억원 확보)

ㅇ 침몰 원목선 위해도 조사 집행계획 수립('04.2)

ㅇ 침몰선박 수색 및 상태조사 후 침몰선 인양여부 분석·결정(`04.10)

(17). 방치폐선 처리

ㅇ 방치폐선 처리비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예산확대 및 적극적 투자로 소유자 미확인 방치폐선의 신속한 처리

ㅇ 담보권설정 방치폐선의 직권처리를 위해 관계법령 개정추진

ㅇ 수협, 해경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방치폐선 사전발생 억제를 위한 감시 및 계도활동 전개

ㅇ `04년도 방치폐선처리 지원비 예산집행 (50백만원)

- 방치폐선의 척수가 가장 많고 소형어선들이 다수 방치된 전남에 지원

ㅇ 담보권이 설정된 방치폐선의 직권처리를 위한 공유수면관리법의 개정으로 장기 방치된 대형선박 제거

ㅇ 어선 등 소형선박의 재질을 FRP에서 알루미늄 합금선등 환경친화적 재질로 전환 유도하고 FRP폐선 처리기술개발을 위한 용역실시

ㅇ 방치폐선처리를 위한 전국관계관 회의개최(매년), 방치폐선처리실태 일제점검(매년 상·하반기) 지속 추진

ㅇ 방치폐선처리 독려를 위한 장관친서 발송 및 유공자 장관표창

2. 생산구조개편을 통한 경쟁력 있는 수산업 실현

(1).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ㅇ 보조금 철폐, 수산시장 개방등 DDA/FTA 체제에 대응하여 감척수요 증가 예상

ㅇ 근해어선에 대한 감척은 `04년까지 완료하고 향후에는 연안어선의 총 10%에 해당하는 6,300척을 추가 감척

ㅇ 연근해 어선감척사업 투자효과분석 용역 실시(`03)

ㅇ 위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장기계획수립(`04)

ㅇ 연안어선 감척(6,300척) 지속추진 및 DDA/FTA 등 어업환경변화에 대응한 탄력적인 대응실시

(2). 양식어업 구조조정

ㅇ 양식어업의 구조조정

- 신규 양식어업 면허금지 및 개발제한을 통한 어장 축소
- 어류, 패류, 해조류양식장의 시설 및 입식기준 개편
- 종묘 생산업자에게 판매량, 판매처 기록 의무화 제도 마련

ㅇ 어업권 이용제도 개편

- 품종별 어업면허제를 통합면허로 개선
- 해조류 양식 면허제를 허가제로 전환 검토
- 어촌계 관리(불법 초과시설, 무기산 사용 등)가 부실한 어장은 일정해역에 대한 개인별 구획허가제로 전환
- 어업면허 우선순위를 개선하여 기술 · 자본과 능력있는 개인 · 법인의 참여권 부여로 경쟁력 강화
- 면허 유효기간(20년) 만료어장은 일정기간 어장휴식년제 실시 후 면허

(3). 원양어업 구조조정

ㅇ 어업협정 체결 및 국제수산기구의 규제 등에 의하여 어장이 축소된 업종 우선 감척 실시 (북해도트롤, 꽁치봉수망, 오징어채낚기)

- ('98~'03) 21척 258억원 → ('04~'06) 10척 112억원

ㅇ WTO-DDA 및 FTA 협상결과, 수산물에 대한 조정관세 등의 폐지로 인하여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는 업종에 대한 적정수준의 감척 추진(해외트롤, 꽁치봉수망, 오징어채낚기)

(4). 노후원양어선 신조대체

ㅇ 노후 원양참치 연승어선(선령 21년이상) 30척에 대한 연차별 대체건조 추진으로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ㅇ 신조를 통한 제품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효과 제고 및 원양 주력업종으로서의 참치연승어업 육성기반 조성

ㅇ 노후어선 대체건조를 통한 선박운영경비 절감 등을 통한 어업 경영수지 개선 및 조업어선의 안정성확보

ㅇ 어선자금 건조자금 지원으로 어업인 부담경감 및 어선세력 확보

3. 어업질서 정착

(1). 불법어업 근절대책

ㅇ 실효성있는 현장중심의 무기한 지도단속 체제 구축

ㅇ 전업지원 및 민간참여 확대

ㅇ 불법어업 예방 및 어업인의 의식전환을 위한 3부 합동 담화문 제작 배포(해양수산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ㅇ 현장중심 지도 단속체제 확립
- 관계기관 공조체제 및 육해상 입체적 단속으로 실효성 제고

ㅇ 어업질서 확립 기반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 어선몰수 : (현행) 5년내 3회 위반 → (개정) 5년이내 2회 위반

ㅇ 어업질서 확립에 민간참여 체제구축
-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 제도 도입('03년부터, 200척)

(2). 어업지도선 건조

ㅇ 어업지도선 확충
- '03년 28척 → '08년 38척 (10척 증척)

ㅇ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
- '09년 28척 → '13년 10척 (10척 대체)

(3). 어업지도 첨단장비 확충

ㅇ 야간 감시 카메라시스템 구입 : 3,500백만원 (14대×250백만원)
- '04년 1대 → '13년 14대 (연차별 투자추진)

ㅇ 고속 단속정(RIB) 구입 : 1,088백만원 (16대×68백만원)
- '04년 2대 → '13년 16대 (연차별 투자추진)

ㅇ 단속정 승·하강시스템 구입 : 848백만원 (16대×53백만원)
- '04년 0대 →'05년 2대 → '13년 16대 (연차별 투자추진)

(4). 불법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

- ㅇ 가칭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 제정(의원입법)
  -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의 잔존선가를 지급하고 당해어선은 해체 처리
- ㅇ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불법어업 근절에 한계가 있음
  - 어업질서확립에 적극적인 민간참여 유인 정책 필요
- ㅇ 현장중심 지도단속체제 확립
  - 관계기관 공조체제 및 육·해상 입체적 단속으로 실효성 제고
- ㅇ 어업질서확립 기반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 수산관계법 위반시 과징금 상향(30%) 조정 등 처분기준 강화(`04)
- ㅇ 불법어선의 잔존선가 매입정리(`05~`09, 350억원)
- ㅇ 어업질서확립에 민간참여체제구축
  -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 제도 도입(`03년부터, 200척)

(5). 무면허·초과시설 등 불법양식시설 근절

- ㅇ 불법양식 상시 감시기구 설치 · 운영
  - 환경단체 · 지자체 등 관계기관 및 단체 참여 유도
  - 불법어업 신고자 포상 및 명예감시관 제도 활성화
- ㅇ 무면허 · 초과시설에 대한 정기적 합동단속 실시
  - 양식 주산단지 위주로 시 · 도(시 · 군)간 교차단속 실시
  - 수협, 어촌계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어업인 공감대 형성
- ㅇ 시설초과 등 수산업법 위반양식업자 처벌 강화 및 불이익 처분
  - 어업면허 취소, 어장 재개발 금지
  - 면세유류 공급 중단 등 각종 정부지원 사업 배제
- ㅇ 양식어장 기록 카드제 도입
  - 어업권자에 대하여 종묘입식량 사료급이량 등을 기록 · 보관 및 제출 의무화

(6). 어선 안전조업 지원

ㅇ 시도별 1개 무선국을 대형화하고(9개소), 7개소는 간이국으로 운영
- 원격운영장비 보강 등 시설 현대화로 인력증가 요소 상쇄

ㅇ 방향 탐지시설은 시설수명 종료시까지만 운영(`05이후)

ㅇ 어업무선국 장기발전 방향 용역실시(`05)

(7). 어선안전점검요원운영

ㅇ 조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출항어선 안전점검 강화
- 출입항 어선의 선원수첩, 안전장비 구비 확인 및 출입항 신고 접수

ㅇ 주요 항 · 포구 어선안전점검요원 운영(계속)
- 39개소 60명(매년 약 55,000척 점검)

4. 소비자 지향적인 수산식품 산업의 육성

(1). 소비자 지향적 공급체계 구축과 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

ㅇ 품질인증 기준의 강화
- 비(非) 인증제품과의 차별화를 통한 인증제품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인증기준을 강화 추진
  · 「품질인증 선정기준 개선연구」 실시 (`03. 8~`04. 7)

ㅇ 친환경 수산물 등에 대한 품질기준 마련
- 항목 : 생산해역의 수질 및 저질기준, 양식용 자재사용 기준, 생산물의 품질 및 표시기준, 사후관리방안 등 마련

ㅇ 산지가공시설은 기존 공장의 경영 내실화에 중점을 두되, 신규지원은 부가가치가 큰 지역 특산품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원
- 성장 유망업체에 대한 공장증설 및 시설 현대화 지원
- 융자중심의 지원을 지양하고, 지역특화 부가가치 품목에 대한 보조사업 발굴 지원

ㅇ 수산가공업 경영기술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지역별 경영기술 자문팀 구성 운영
- 지역의 전문가(대학, 연구기관), 관련공무원, 수협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팀을 구성하여 필요시 현지에서 경영 및 기술지원

○ 가공업체 경영자금 지원확대

- 기존업체 운영정상화를 위한 경영자금 운영 지원

· 가공업체 운영자금(150억원), 수산물 유통자금(250억원) 운영

○ 중국과의 활어 위생약정 체결시 원산지 표시관련 사항 포함 후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추진(`04년 상반기)

○ 예방적 위생관리시스템인 HACCP의 점증적 적용 확대 등 수산물 생산·가공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 HACCP 조기정착을 위한 수출수산물 가공업체 지원 추진
- 생산 · 출하 전단계 수산물에 대한 HACCP 기준 고시 제정 및 시행

· 활넙치, 활뱀장어 생산업체 지정 · 운영

○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 강화로 수산물의 신뢰성 확보

- 생산에서 저장까지 단계별 종합적인 안전성 조사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수산물 생산 공급에 기여

○ 수입수산물의 사전 안전관리 강화로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 위생관리가 취약한 국가와 수산물 위생약정 추가체결 추진 및 기 체결국가와 외교강화로 약정성실이행 유도

(2). 거점산지 · 소비지 시장 육성을 통한 유통 · 물류체계 개선

○ 매년 2~3개의 수산물 위판장을 지속적으로 건립

○ 수산물직매장 사업

- 산지뿐만 아니라 수도권 등 소비지에도 수산물 직매장을 신설하여 수산물 수요확대 추진

·`03(25개소)→`08까지 15개소 추가 지원(소비지 4, 산지 11개소)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03년부터 추진중인 인터넷 수산시장을 계속적으로 유지 · 확대

(3). 시장지향적 수산물 수급시스템 구축

○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을 점진적으로 축소(`07년 폐지 검토)

- 정부 수매 품목 및 물량을 점진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어업인의 자율성이 제

고되도록 정부수매 · 비축사업 운영

·수매대상 품목조정 (`06년 4개품목으로 조정)

·마른오징어(2003), 간미역 · 냉동조기(2004) 폐지

○ 자율적 수급조절을 위해 민간가격 안정사업을 확대

- 생산자 단체, 유통·가공업체 등 민간의 수산물 수매자금에 대한 융자지원 강화

○ 양식어업 관측제 도입

- 수산물 수급예측의 정확성을 높여 생산자의 자율적 생산량 조절이 가능하도록 양식어업관측제 실시(`03년 김 시범실시)
- 우선 생산량, 출하예정물량, 산지 · 소비지가격 등 생산 · 유통정보를 주기적으로 관측 제공

○ 유통협약제 등 수산물 출하조절사업 실시

- 유통협약 제도를 조기에 도입하고 수매 · 비축대신 산지 폐기 비용을 지원, 자조금 조성도 적극 지원

○ 정부비축사업과 민간 가격안정 사업을 종합적으로 비교 · 평가하여, 수산물 가격 안정사업의 전체적인 효율증진 방안 강구

(4). 주력상품 개발을 통한 수출상품의 부가가치 증대

○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하여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및 시장개척단 파견 등 해외 마케팅 활동 강화

○ 우리수산물의 우수성 광고 등 홍보활동 강화

○ 수출 주력상품에 대한 지원 강화로 수출상품 부가가치 증대

- 대일수출 김의 품질향상을 위해 '김 이물질 선별기' 구입 · 지원
- 이질균 및 패독 등 굴 검사 분석기기 운영비 지원

○ 수출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개최 국제박람회 개최·지원

- 부산국제수산무역박람회를 세계 최대 수산전문박람회로 발전 유도

○ 해외시장경쟁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수출전략상품 개발 지원

- 수산물 수출주력업체 및 세계일류상품(산자부 주관) 추가발굴 및 지원
  · 수산물 수출주력업체 : (`03) 89개사 → (확대) 100개사
  · 세계일류상품(`03 현재) : 5품목 9개 업체
  · 수출원료 수매자금 우선지원 및 수출보험료 우대지원 등

ㅇ 수출진흥 대책회의 등을 통한 수출애로 발굴 및 해소노력

- 수산물 수출진흥 대책 회의 및 간담회(수시) 개최
- 인터넷홈페이지 "수산물 수출상담실" 적극 운영
  · 수출상대국의 현지 시장동향 등 교역정보 제공 확대

ㅇ 비관세 무역장벽인 수입쿼타 제도개선 등에 대한 협의 강화

- 한·일 수산물 교역 실무회의 : 매년 2회(상, 하반기)
- 일본, 중국 및 EU 등 수출용 가공공장 등록 확대 추진

5. 수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체제의 확보

(1). 다양한 직접지불제 도입

ㅇ 직접지불제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계적 추진

- 직접지불제 도입 타당성 연구 → 우선시행분야 사업설계 → 시범 사업 실시 등 사업시행

ㅇ 직접지불제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01~`02)

- 우선 도입 5개 분야 선정(친환경 양식어업 및 자원보전 직불제 등)

ㅇ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제(`04), 어장휴식년제 직불제(`05)

ㅇ 친환경 양식기자재 사용어가 직불제(`07), 노령어가 조기은퇴 및 조건불리 어촌 직불제(`09)

(2). FTA 피해 지원 추진

ㅇ 어업인, 학계 등이 참여하는 「FTA 대책단」 및 「협상자문회의」 등을 구성하여 최적의 협상 전략 강구

※ WTO-DDA 및 FTA 대비 「수산정책전략기획단」을 구성하여 중장기 수산투융자계획 수립 등 향후 수산정책 개발 및 대책 수립

ㅇ 협상타결에 대비한 국내 수산업대책을 WTO-DDA와 연계하여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FTA 체결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특별지원체계 수립 추진

- 국회에 계류 중인 FTA이행특별법의 제정을 조속히 추진

○ FTA 및 WTO-DDA 통상관련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바, 통상 인력 및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

○ 지방 설명회, 연찬회, 세미나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FTA 논의결과를 설명하고, 협상 결과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대어업인 홍보 강화

(3). 수산정책자금 지원제도 추진

□ 수산업 종합자금제도

○ 기능별, 용도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각 사업 및 자금의 통폐합

- 통합대상 : 수산업 경영체에 대한 개별 융자사업으로서 투자수요가 시장에서 결정되며 투자수익이 사업 주체에게 귀속되는 사업
- 통합제외 : 정책적 사업, 공공성 사업, High-risk의 프런티어 사업 등

※ 예) 수산물종합가공단지조성, 감척사업 등의 어업구조조정사업 등

- 통폐합에 따른 계정과목 등의 정비

○ 소요자금의 수시신청, 수시대출 등 종합적인 대출체제 확립

- 대출재원을 정부예산 및 수협자금(이차보전)으로 구성, 재원의 유동성 확보
- 심사평가 기준변경에 따른 통합대상 자금의 기존대출금 대환 또는 기간연장 등 문제점 해소방안 마련
- 경영발전 단계별 추가 소요자금의 지속적인 대출체제 마련

※ 일회성 시설자금 위주 → 시설+운전, 개보수+운전자금 병행 대출

○ 대출취급기관(수협)의 사업성 위주 심사평가에 의한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체제 구축

- 평가 등급별 Credit line 설정을 위한 대출심사 및 평가기준 개발

※ 예) 적법성, 사업계획, 경영평점, 사업타당성 등급, 소요자금 및 채권 보전심사 등

- 대상자에 대한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를 위한 경영실태 조사방안 마련

※ 예) 경영컨설팅 지원제도와 연계한 체계적 사후지원 및 관리 등

○ `06년 시범사업 실시를 목표로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단계별 시행

단계별	1단계(`04)	2단계(`05)	3단계(`06)	4단계(`07~)
추진목표	연구조사	기반조성	시범사업 실시	본격 실시

□ 대손보전제도

○ 단기 : 기존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 강화로 현행 체제 유지

- 출연 대상자금 및 부분 대손보전제도 확대를 통한 현행 대손보전기금의 기능 정상화 추진

※ 기금확대방안

·(현행) 농특 · 농안기금의 0.5% → (확대) 재특자금까지 0.2% 추가출연

- 농업부문의 수산부문 분리 추진이 현실화되거나 산업적 측면에서 WTO-DDA 영향이 농업부문보다 불리할 경우를 대비하여 어업인, 수협 및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수산금융 전담 대손보전제도 도입 추진

- 수협의 대손보전 신청 추정액이 과다인 점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만의 추가 출연으로는 부실채권의 완전정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수산부문 대손보전 신청 추정액

·중앙회 515억원, 회원조합 344억원 등 859억원

○ 장기 : 수산금융 전담 대손보전제도 도입

- POST-DDA 환경하에서 안정적인 수산금융 지원체계 확보를 위해 수산금융 전담 대손보전제도 도입

※ 새로운 대손보전제도 구현을 위한 전제조건

·수협법 등 관련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출연 재원 확보

·현 부실채권에 대한 장기분할보전 등으로 부담 완화 등

(4). 수산정책자금 부채경감대책 추진

○ 중장기 정책자금

: 3%(`01~`03기간중 상환도래 자금)/2년거치 5년상환

⇒ 1.5%(변동금리적용) `03년말까지 지원된 정책자금/5년거치 15년상환

○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

: 6.5%/5년거치후 일시상환 ⇒ 3%/현행유지

ㅇ 수산업 경영개선자금

: 6.5%/3년거치 7년상환 ⇒ 3%/현행유지

ㅇ 수산업 경영회생자금

: 없음 ⇒ <신설> 3.0%/3년거치 7년상환

(5). 면세유 등 수산조세 지원체제 개선

ㅇ WTO-DDA협상 수산보조금 논의 적극 대응

ㅇ 수산부문 세제지원 연장 및 확대 추진

- 재정경제부에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한 연장 및 세제 지원확대를 건의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법령 개정 노력

ㅇ DDA협상결과 어업용 면세유 공급 등 수산부문 세제지원이 금지보조금에 포함시 어업인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사업 추진

(6). 수산부문 정책보험제도 도입

ㅇ 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험제도

- 법률 등 관련법령 제도 도입 : 2003년까지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정 (2003. 3. 19)

ㅇ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

- 보험설계, 보험요율 결정을 위한 기초통계조사 등 철저한 준비와 도상연습 과정을 거쳐 시험사업을 통한 단계적 도입
- 안정적인 보험사업을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을 통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선행되어야 함
- 가입대상확대 및 가입률 증대를 통한 대수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어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보험인식 제고

ㅇ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안정적 기반 구축

ㅇ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 도입 추진

(7). 수협의 조기 경영정상화 추진

ㅇ 자금지원 조합의 MOU 이행상황에 대한 분기별 평가 및 점검 실시

- MOU 불이행시 제재 및 추가 경영개선방안 마련후 추가조치

○ 합병명령 조합(3개)은 `04.6월까지 협병 완료토록 지도 · 중재

- 합병 시한까지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전 등 행정조치

○ 합병명령 조치유예 조합은 `04년말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재평가하여 합병 등 후속조치

- 유예조건 불이행, 경영악화 조합은 통폐합 및 회생가능 조합은 자금지원으로 경영정상화 추진

○ 수협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추진

- 수협법시행령, 시행규칙, 수협정관(예) 등

○ 일선수협의 경영기반 확립시까지 특별감사 추진

- 자금지원 조합의 MOU이행상황 점검과 병행한 감사 실시

(8). 영어자금 지원추진

○ 영어자금의 적기 저리공급으로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어업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수산물 생산증대를 통한 국민식량산업인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가소득 증대에 기여

○ 어업인의 부담경감 효과 (`04-`08) : 3,025억원

○ 수산업의 환경변화에 대한 어업인의 자생적 대응력 강화 지원

○ 자금 수요에대한 융자협의회를 운용하여 개인 신용도 등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자금 운용

○ 금융기관(수협)의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 영어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에게 홍보

○ 수협중앙회 및 일선조합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지도 · 감독

※ 04년도 영어자금 금리인하 내용

구 분	`03년도	`04년도	비 고
연근해어업	4.0%	3.0%	
원양어업	4.5%	3.0%	

(9). 원양어업경영자금이차보전 추진

○ 경쟁 대상국인 일본, 대만 등과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어자금 목적으로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속 실시

○ 2004년이후 원양어업경영자금 운용규모 2,070억원 지속유지

○ 원양어업경영자금 대출금리 인하(연 4.5% → 3.0%)

6. 수산업에 대한 새로운 발전 동력의 확보

(1). 수산업전문인력의 지속적 육성

○ 수산계대학 수산계학과의 등록금 면제방안 강구
- 국립학교설치령 제16조(학비보조) 규정개정 추진

○ 해역별 수산계 특수목적고 지정 및 국립학교 전환 추진
-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자영수산과에서 해역별 수산계고교로 확대 지정하고 국립학교로 전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및 국립학교설치령 개정)

  예산지원 : 해양수산부, 학사행정 : 교육인적자원부

○ 해양생물연구센터 건립 지원(`04~`07)
- 강릉대 등 지역별 해역특성에 맞는 연구센터 건립 추진

○ 가칭 "자원환경조성센터" 건립 지원(`08~`13)
- 신청대학 접수 및 평가 후 선정

○ 연구센터 운영 지원(`05~`13)
- 수산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센터 운영 효율화와 지역실정에 맞는 현장애로 기술개발

○ 연구센터 운영 지원(`05~`13)
- 수산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센터 운영 효율화와 지역실정에 맞는 연구 지원

○ 어업인후계자 사업기반 조성자금 확대 및 지원조건 개선
- 사업기반 조성자금(1인) : 20~50백만원 → 50~100백만원
- 지원조건 : 연 4%, 5년거치 10년 상환→연1~1.5%, 5년거치 15년 상환

ㅇ 어업인후계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 신규 및 보수교육 1회 → 경영자 교육 및 해외연수 등

(2). 수산연구 개발투자 확충 및 개발기술의 실용화

ㅇ '05년 이후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을 확대추진 할 수 있는 재원대책 마련

- 농어촌특별세 연장('04년→'09)에 의한 투자재원 확보

ㅇ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하여 매년 적정수준의 예산을 증액하여 수산업을 친환경적 · 고품질 ·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위한 첨단기술 개발연구사업 중점 추진

ㅇ 수산과학기술중장기계획 수립 · 추진

- 수산부문 국가기술지도 작성과 연구개발 주체간 역할분담 및 연구개발 투자계획 등 제시
- 수산과학기술개발계획은 5년마다 수정 가능토록 법적근거 마련

(3). 수산기술관리소를 최일선 종합행정기관으로 기능재편

ㅇ 전국 29개 수산관리과(소)를 우리부의 최일선 종합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를 위한 기능재편

- 출장소 및 수산기술관리소를 통합 운영함으로서 해운 · 항만 · 수산 등 One-Stop민원처리시스템 체제 구축

ㅇ DDA, FTA 등 세계경제질서 재편에 대응한 수산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정립

- 직접보조금 철폐 등으로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간접보조금 지원대책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행정지원 등

ㅇ 어촌정보화 인프라 및 영상운영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도시와의 정보격차 해소

- 어촌사랑방 및 인터넷 수산시장 연계 추진대책 등

(4). 수산통계의 이관과 어촌정보인프라 확충

ㅇ 어업생산통계의 표본수 및 양식생산량 전수조사품종 확대

- 표본수 확대 : '04년까지(1,050개) → '05년(2,000개) → '07(3,000개)
- 전수조사품종 확대 : '04년(6종 →10종), '05년(전품종으로 확대)

ㅇ 어업생산통계 시·군별 통계자료 작성(`07년도)

- 목 적 : 시 · 도별 →시·군별 자료작성으로 통계 활용도 증대 도모
- 시·군별 표본설계를 위한 표본수 증대 및 예산확보 후 조치

ㅇ 수산분야 다양한 정부승인 수산통계 확대로 정책기초자료 제공

- 확대대상 통계 :「양식생산기반시설조사」,「수산업분야 총조사」 「수산물소비통계」 등 3종이상 확대
- 추진계획 : `04년 예산확보 등 연차적으로 확대

ㅇ 수산통계 종사자 인센티브 제공 및 조사인력 확충

- 양식품종 전수조사 어업가구 답례품 지급(연 2회 / 설, 추석)
- 임시조사원 확보 · 투입 : `04년 63명 → '05년 100명이상으로 확대

ㅇ 수산통계자료 외부제공 웹 서버 구축 · 운영(`05년부터 추진)

ㅇ 어업인 정보화교육 : 매년 1만명(기초, 중 · 고급교육으로 확대)

ㅇ 원격영상시스템 구축

- ('03까지) : 31개소(본부, 수산과학원, 지방청 및 수산기술관리소) 구축 완료
- (`05년) : 8개소(신설 해양수산사무소)

ㅇ 어촌정보사랑방 운영 지원 : (`03까지) 293개소 → (`13까지) 850개소

- 모범어촌계, 수산업경영인연합회 등

(5). 어업자원관리 정보화 사업

ㅇ 개발 완료한 시스템의 활용성 강화 지원

ㅇ 3차년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협의, 워크샵, 보고회, 사용자 교육 실시

ㅇ 수산자원관리 · 조성 센터 설립시 동 시스템의 운영 · 관리 위탁

ㅇ 완료 사업 활용성 강화를 위한 워크샵 개최 : `04. 1

ㅇ 3차년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보고 · 시연회 개최

- 중간보고회(`04. 4), 최종보고회(`04. 8)
- 효율성 강화를 위한 사용자 교육 실시 : `04. 9~10

7. 어촌지역 활성화와 어업인 복지확충

(1). 어촌종합개발사업

○ 어업지원 및 어촌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정비
- 선착장, 물양장, 방파제, 선양장, 호안 등 해안 및 어항시설
-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해안도로 등 도로 및 어업지원시설
- 상하수도, 어업인회관, 해안조명 등 복지 및 생활환경시설

○ 어가소득 향상을 위한 유통·관광 등 소득원시설 확충
- 산지가공, 화입건조, 냉장냉동, 활어직판장 등 가공 및 유통시설
- 특산품판매장, 주차장, 해양소공원, 전망대 등 관광기반시설

○ 2차 개발대상 65개 권역 확대추진(`07~`13)
- 현재 추진 중인 농특세 시한연장과 `03년 수산정책연구과제로 채택된 "어촌종합개발사업 평가 및 향후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라 사업 방향 재설정 검토

(2). 다기능을 갖춘 국가어항개발 촉진

○ 신규 개발항은 21세기 해양관광 수요에 맞추어 종합 기능항으로 개발
- 지역특성에 따라 어촌관광 · 교통 등을 고려하여 개발

·어항배후 부지내 위판장, 가공유통시설, 관광판매시설을 체계화

·유람선 · 유어선부두 시설 등 해상관광 기반시설 확충

·녹지공간 및 낚시터 조성, 친수 방파제 등 친수시설 확보

·활어보관시설 등 수역확보로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생산의 장으로 활용

○ 정비대상항은 이용자 편의위주로 기존어항의 과감한 정비·확장
- 입지여건, 이용실태, 효율성 등을 고려 시설 개선

·수역확장, 접안시설 보완, 하수유입차단 관거 설치, 친수공간 제공 등

·진입도로 개설, 주차장, 가로등 설치 등

○ 기 지정 국가어항의 조기 완공을 위한 집중투자
- 국가어항 105개항 중 계속 투자항 37개항을 2007년까지 완공
  · (현재) 65% → (2007년) 100%(목표)

※ 어선의 안전 수용율이 낮은 서 · 남해안에 중점 투자

ㅇ 개발잠재력이 있는 어항을 종합다기능어항으로 시범개발
- 시범적으로 동·서·남해에 각 1~2개씩 선정 집중개발

ㅇ 다기능 어항개발 제도확립을 위한 가칭"어촌어항법" 제정
- 어항시설사업에 수산자원육성을 위한 시설 등 추가
- 어항부지내 민자유치 촉진 규정 마련
- 어항구역내 "관광어항구" 마련

ㅇ 어항부지 매각 및 민자유치활성화 방안 마련
- 기본시설부지 및 공공용지 외의 부지매각 추진
- 어항부지내 수산물유통센타, 특산품판매장 등의 유치로 어촌 소득증대 및 관광객 유치 확대

(3). 지방어항개발

ㅇ 어항개발계획수립 시 당해 항과 관련되는 어촌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반영
- 어촌체험, 리조트, 휴양(낚시, 해양공원 등), 양식, 전시관 등 어촌지역 소득기반시설을 어항개발계획과 연계

ㅇ 지방어항의 조기완공을 위한 국고지원액 대폭 상향조정 추진
- 매년 국고예산을 상향(전년대비 10%이상) 확보 지원

ㅇ 완공위주의 집중투자로 완공율 제고
- 신규투자를 억제하고, 국고투자 항당 최소투자비를 상향조정
- 지방자치단체 자체개발 및 조기집행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4). 연안항개발

ㅇ 2002년 재수립된 전국 연안항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개발
- 접안시설 확충 : 5,290m 증가(21,586→26,876m)
- 하역능력 제고 : 3,814천톤 증가(10,906→14,720천톤)

ㅇ 연안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는 물류기지로 조성

ㅇ 연안과 도서를 잇는 긴밀한 기초수송망 구축을 통한 각 지역간 해상교통 연계성을 강화

ㅇ 해상교통서비스 제고를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

ㅇ 인적 · 물적 수송만의 단순 기능에서 탈피하고 증가가 예상되는 해양레저 및 관광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Water Front 개념이 도입된 다목적 기능을 가진 항만으로 개발

(5). 연안정비사업

ㅇ 연안환경보전 도모를 위한 정비사업 확대추진

- 재해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연안환경 개선·복원을 위하여 「제1차 연안정비10개년계획」에 따른 정비사업 지속 추진

ㅇ 연안침식방지 종합대책수립 및 모니터링 체제구축

- 연안 난개발로 인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침식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연안침식방지 종합대책 수립시행 (`04. 6)
- 근간의 증가하는 연안백사장 침식피해에 대해 정확한 원인규명 및 효과적 대응을 위한 과학적 모니터링 체제 구축

(6). 어촌체험마을 조성

ㅇ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 종합안내소, 진입로, 주차장, 샤워장, 화장실 등 어촌체험 기반시설

ㅇ 어촌과 어우러진 여가활동을 위한 마을별 체험프로그램 개발

- 갯벌체험, 승선체험, 양식장체험, 바다낚시, 문화체험 등 어촌체험

ㅇ 어업인의 자율적인 어촌관광 운영을 위한 리더 육성

- 체험프로그램 및 안내를 담당할 관광리더 · 가이드 교육과정 운영(수산과학원 연수부)

ㅇ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확대추진(`09~`13)

- 전국 60개소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확대 조성 검토

(7).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ㅇ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체계를 현행 최저등급 보험료(220천원) 기준에서 소득수준별 정률방식으로 개편

- (`03~`04. 7) 최저등급의 표준소득월액(220천원)의 50% 정액지원
- (`04. 7~) 납입보험료의 50% 정률지원(중위수 소득 보험료의 50% 한도)

(8).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ㅇ 농어업인 건강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여 단계적으로 50%까지 확대
- (`03) 납입보험료의 22% 경감 → (`04) 30% 경감
  → (`05) 40% 경감 → (`06~) 50% 경감

(9). 어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

ㅇ 어업규모가 소규모인 어업인의 자녀 0~5세아 중 보육시설 및 유치원 취원아에 일정액의 보육료 지원

- 보육료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법정저소득층(기초생보자) 보육료 지원액의 50% 수준 지원(단, 5세아는 100%)
- 교육비 : 국공립·사립 유치원 취원아를 대상으로 하되

·5세아는 입학금과 131,000원/월 범위내 수업료 납부액

·3-4세아는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수업료의 50% 수준 지원(국공립 11,000원, 사립유치원 월55,000원 수준)

ㅇ 지원형태 : 국고 50%, 지방비 50%

ㅇ 사업시행주체 : 시장 · 군수 · 구청장

(10).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보조

ㅇ 지원금액을 학교운영 지원비까지 지원추진

ㅇ 지원금액 증액 : 입학금 + 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 포함

(11). 농어업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ㅇ 지원단가 현실화 및 지원대상 인원 확대

ㅇ 지원대상 인원의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05)
- 학기당 15천명 → 20천명

- 학기당 200만원 → 등록금 평균액 수준

(12). 연근해 어선원에 대한 교육훈련

ㅇ 선원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금어기, 휴어기에 선원들에게 새로운 정보의 제공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기술의 전수

ㅇ 연근해어선 종사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기회 확대

ㅇ 연근해어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업교육의 내실을 위하여 선박안전운항을 위한 전문과목의 신설 등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ㅇ 해양경찰청의 연근해 어선의 입출항관리시스템 개발과 연계하여 어선원 승선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로, 총톤수 5톤미만 소형선박 종사자에 대한 새로운 하위등급 해기사 면허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여 무자격자 운항에서 유자격자로 양성화하는 방안 검토

(13). 선원의 복지 및 직업안정을 위한 정책

ㅇ 선원의 체불임금 등의 적극 해소를 위한 선원근로 감독업무 강화
- 현재 : 49명 ⇒ 목표 : 59명(근로감독관 10명 증원)

ㅇ 선원 구인 · 구직활동 강화

ㅇ 선원복지프로그램 개발·보급

ㅇ 선원처우 개선을 위한 선박소유자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ㅇ 선원의 최저임금을 육상근로자 대비 20% 상회하는 수준 반영

ㅇ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사업규모 확대
- 선원복지를 담당하는 동 기관의 사업규모 확대 및 기구확대 개편
- 선원 구인 · 구직관련 주요지역 전산망 구축(부산, 인천, 여수 등)
- 선원 휴양시설 확충(현재 22개소) 및 장애선원 재활프로그램 강화
- 저소득 선원 생계지원대책 마련

《참 고 1》

중장기투융자 세부 계획내용

(단위: 억원)

구 분		03	04	05	06	07	08	04-08	09-13	04-13
합 계		8,564	9,252	10,174	10,580	10,674	11,709	52,389	71,945	124,334
분야별	지속가능한 어업실현을 위한 자원관리 강화	1,687	1,489	1,185	1,290	1,336	1,309	6,609	9,279	15,888
	해양환경 개선	276	290	329	290	294	299	1,502	1,809	3,311
	생산구조 개편을 통한 경쟁력있는 수산업	490	475	905	922	826	848	3,976	6,701	10,677
	어업질서의 정착	361	427	443	459	476	493	2,298	2,983	5,281
	소비자 지향적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1,025	1,062	1,393	1,400	1,328	2,086	7,269	8,968	16,237
	수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체제의 확보	494	857	1,177	1,192	1,302	1,391	5,919	9,279	15,198
	수산업에 대한 새로운 발전동력 확보	493	609	657	658	636	644	3,204	3,899	7,103
	어촌지역 활성화와 어업인 복지확충	3,738	4,043	4,085	4,370	4,476	4,640	21,613	29,027	50,640
재원별	예 산	7,430	7,890	8,697	9,087	9,260	10,295	45,229	64,062	109,291
	기 금	1,133	1,362	1,477	1,493	1,414	1,414	7,160	7,883	15,043
기관별	해양수산부	8,074	8,348	8,917	9,032	9,118	10,031	45,446	61,789	107,235
	타 부 처	490	904	1,257	1,548	1,556	1,678	6,943	10,156	17,099

《참 고 2》

주요수산 정책지표

	2002	2008	2013
ㅇ 어가소득(만원)	2,181	3,054	3,967
- 도시가구 소득대비	(78.0%)	(88.3%)	(97.6%)
ㅇ 어업인구(천명)	215	192	174
ㅇ 어선수 (척)	94,388	87,832	69,491
- 연안어업	62,870	56,480	40,233
- 근해어업	4,541	4,411	2,335
- 원양어업	482	446	408
- 기타어업	26,495	26,495	26,495
ㅇ 수산물 국내소비량(천톤)	3,433	4,501	5,479
ㅇ 수산물 생산량(천톤)	2,476	2,833	2,960
ㅇ 수산물 수입량(천톤)	1,186	2,615	3,337
ㅇ 수산물 수출량(천톤)	430	500	550
ㅇ 자율관리공동체수	122	2,000	2,000
ㅇ 어촌종합개발	93	160	225
ㅇ 수산물 직판장	22	40	60
ㅇ 산지 위판장	234	250	265
ㅇ 완공 어항수	153	255	255
- 국가어항 (105개항)	68	105	105
- 지방어항 (317개항)	85	150	150